

「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 신설(안 제8조제8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37조의2, 제37조의3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경로당 등록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구미시 노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노인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